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063호

#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선정 결과 공고

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「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」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.

2026. 1. 27.

산업통상부장관

□ 평가기관 선정결과

| 구 분 | 선 정 기 관 |
|---|---|
| 재제조제품 품질인증(REMAN) | (사)자원순환산업인증원 |

끝.